



협회소식

기업구조개혁과 경쟁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조찬 간담회 개최

본 협회,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강연

본 협회는 지난 8월 30일(수)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회원사 임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남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기업구조개혁과 경쟁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위원장은 물가나 금리, 외환보유고 등의 거시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가 건전하고 튼튼한 것으로 보여지며 미시적으로 보아도 기업의 재무구조가 과거의 부채

비율이 300%로 크게 줄어드는 등 획기적으로 좋아진 반면, 기업경영에 대한 오너의 의식구조에는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많은 그룹이 선단식 경영을 지속하고 체질개선을 뒤로 미룬 채, 대주주의 경영전환 등 지배구조의 왜곡과 산업자본의 제2금융권 지배가 심화되는 등 금융기관의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자 역할의 한계를 들어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위원장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의 근절, 상호채무보증의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등을 통해 기업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부당내부거래는 정부의 규제보다는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할 것이라며, 그 예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과 배임죄 추궁 등 소송의 활성화 등을 들었다. 또한 공정위는 조사와 처벌이라는 기업과의 소모전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자율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을 차별화 하는 등 시장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들도록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은 전적으로 기업에게 책임이 있으며 출자총액에 대한 염려가 없어진다면 언제든지 폐지될 수 있는 만큼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해달라고 이 위원장은 주문하였다.

경쟁제한적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주로 민원성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공정위에서는 이를 위해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400여개에서 500여개의 규제법령에 대해 지금의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의 도입으로 규제가 폐지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시책방향의 전환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독과점 구조 개선책으로는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획정이 주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미국, EU, 일



협회소식

본의 국제적 기준에 맞는 기업결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소비자주권 확보를 위해 공정위에서는 정정광고제를 활발히 시행해 나갈 것이며 30여만 종류에 이르는 약관에 대해서는 분류작업을 거쳐 표준약관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관련 공동카르텔의 예외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대기업의 30% 미만 출자에 대해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다고 밝히면서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현재 미국과 EU국이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확대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업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공정위로 통보해줄 것을 요망하였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투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막는 대신 중소기업간의 경쟁을 유도할 것이며, 카드산업의 신규진출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교육 실시

본 협회는 지난 8월 29일(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경련 국제회의실에서 회원사 및 비회원사 임직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사인 공정위 표시광고과 김태구 과장은 표시·광고법의 제정과정에 대해 표시·광고 관련 사항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일반불공정 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짐으로써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미약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억제장치가 미흡하여 시장경제의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1999년 2월 5일자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과장은 표시·광고법에 새로 도입된 주요 제도인 중요정보공개제도와 광고실증제도, 임시중지명령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업계가 이를 잘 이해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